

서울특별시의회
제314회 임시회
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

2022. 9. 27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이 경 숙

□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1지역 이경숙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의회 표창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 조사 및 표창 취소
조항을 신설하는 등 표창 조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
함입니다.

□ 또한 서울시의회 표창을 수여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파
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 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
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개정('22.1.
4)에 따라 의장표창이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에 포함되어 타 기관
공무원에게 표창 수여 시 추진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
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
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